

# 학술 연구기금 관리 규정

제정 1998. 9. 3.  
제2차 개정 2000. 10. 24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출연된 학술연구기금(이하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합리적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기금이라 함은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본교에 출연된 교비적립금, 재단출연금, 외부기관 기부금, 연구지원간접경비 사용내규 제3조에 따른 사용후의 잉여금, 기타수입금 등의 재산을 말한다.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호에 의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활동 지원이 아닌 기타 목적을 위해 타 기금으로 사용되거나 전용 할 수 없다.

1. 연구년제 연구교원의 연구비 지급
2. 교내연구비와 관련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
3. 기타 학술연구활동 지원연구비와 관련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

**제4조(위원회)**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3조 2항의 2, 3호의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경우 학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다.

**제5조(회계)** ①회계는 학교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하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회계규정에 따른다.

②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6조(감사)** 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업무주관부서는 내부감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**제7조(주관부서)** 이 규정에 관련된 사무는 교무처 연구협력과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00.10.24)

**제8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1998학년도 제1차 연구교원 연구비는 이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

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